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

<`19. 7. 1. 기획조정실 운영지원부>

1 추진배경

○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발주하는 모든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**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상 시설 범위 확대***

*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('19. 3. 28.)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현장도 포함

○ 공단 임직원, 장애인근로자(훈련생 포함), 공단 발주 공사 근로자의 생명 · 안전 보호를 위한 「**2019년 안전기본계획***」 확정

* 제179회 이사회에서 의결 • 확정('19. 6. 25.)

○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원·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*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, 대상업종(철도운송 등 3개)에 전기업이 추가되는 등 **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장에 대해 안전사고 연대책임 강화**

*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 ① 도급인 사업장 정보, ② 도급인별 수급인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재해, ③ 원·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를 공표하는 제도

2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

○ **(안전관리 계획 제출)**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체결 시, **시공업체 사업주는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서면으로 공단에 제출**해야 함

- 현장 대리인 · 안전관리자 ·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, 현장 안전점검 실시 계획 등이 포함된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공단으로 제출해야 함

- 공단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검토 결과,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보완요청에 응해야 함

- 적용대상: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

○ **(위험성평가 결과 제출)** 공단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도급인 사업장과 발주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을 통하여 **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실시를 요청**하여야 하며, 공단은 수급인이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수급인에게 필요한 보완 조치 요구할 수 있음

- 수급인은 공단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를 착수 또는 착공공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공단의 보완 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단의 보완요청에 응해야 함

- 적용대상: 계약서를 작성하는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

○ **(안전조치 이행 점검)** 공단은 공사기간 중 공단 직원 1명으로 하여금 근무일 기준 1일 1회 이상 **공사현장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**하여야 함

- 공단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를 적발한 경우, 즉시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

* 점검표 양식: [별지] 공사현장 안전조치 준수현황 점검표

- 적용대상: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

○ **(작업중지 요청제)** 공단 직원 또는 시공업체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**시공업체 사업주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**할 수 있음

- 안전관리감독자 또는 시공업체 사업주는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즉시 이행하여야 함

- 공단은 폭염,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음

-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시공업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의 작업중지 요청에 따라야 함

- 적용대상: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

○ **(위험작업 허가제)**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의 수급자는 공단 시설 내에서 위험작업(화기작업, 전기작업, 고소작업, 밀폐공간 작업, 굴착작업, 중량물작업)을 하고자 하는 경우, **위험 작업허가 신청(승인)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작업**을 진행하여야 함

- 세부 위험작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

구 분	대 상 작 업	비 고
화기작업	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	소화기 설치, 화재감시자 지정 必
전기작업	전압 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	절연장갑 착용, 잠금장치(Lock out), 안전꼬리표(Tag out) 必
고소작업	지면 또는 지하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위험 공사, 현수막 설치	안전모 등 안전보호구 착용 必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, 안전대 착용 必
밀폐공간 작업	오·폐수 처리장 등 탱크, 피트,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장소	가스농도 측정 必
굴착작업	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높이가 2M 이상 지반 굴착 작업	배관, 전선 확인 必
중량물작업	이동식 크레인, 지게차 투입 작업 등	작업계획서 必

- 현장 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작업허가 승인을 받은 공사장 현장 근로자가 안전조치 이행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업을 하도록 관리 · 감독하여야 함

- 적용대상: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

○ **(일요일공사 제한)** 시공업체 사업주는 주52시간 근무제* 시행취지에 부응하고, 안전에도 취약한 휴일공사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**'일요일공사 휴무제'에 적극 동참**하여야 함

* '주52시간'은 근로자 기준 ⇔ (상호 보완관계) ⇔ '일요일 휴무제'는 현장기준

- 시공업체 사업주는 토요일도 안전이 확보되도록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, 일요일은 불가피한 경우*에 한하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 가능

* 예) 재해복구,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, 격오지 현장, 시내도로 보수 등

※ 토요일까지 공사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적정임금제 시행, 포괄임금제 개선 등 근로자 소득향상 대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도입 검토

-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장 현장 근로자는 시공업체에서 지정한 현장 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없이 단독공사 진행 불가

- 적용대상: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

○ **(안전사고 발생 보고)** 시공업체 사업주는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개요, 피해상황, 응급조치 사항,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**안전사고 발생보고서(공단 지정 양식)를 공단에 제출**하여야 함

- 시공업체 사업주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고,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함

- 적용대상: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

○ **(공사장 미세먼지 관리)** 공단은 발주 공사현장 사업 담당자 및 계약상대자가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」(환경부)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」(고용노동부) 등 **미세먼지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토록 지도·감독**할 수 있음

- 미세먼지 경보·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「공사계약 일반조건」 제47조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정지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

-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,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함

- 적용대상: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

3 행정사항

○ 적용대상: 안전관리 계획 제출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의무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정부(기획재정부) 방침 확정 시,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확대 적용 가능

○ ’19. 7. 1. 이후 공사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시, 계약조건에 위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약 체결

○ ’19. 6. 30. 이전에 입찰공고가 완료되었으나, 현재까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, 위 제2항의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기술협상 실시

- 계약상대자가 공단의 요구사항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할 경우, 위 제2항의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첨부·간인하여 기술협상서에 첨부

- 계약상대자가 공단의 요구사항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, 불수용 사유를 기재하여 기술협상서에 첨부

○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및 별지 서식은 공단의 「재난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」 제정 또는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

별지 **관련 서식**

[별지 서식]

공사현장 안전조치 준수현황 점검표

□ 공사 개요

발주기관	
공사장명	
소재지	
공사기간	
시공자	
시공업체 현장대리인	
공단 안전관리 담당자	
안전관리계획 제출 일자	
위험성평가 제출 일자	

□ 안전조치 준수현황 점검결과

점검일자	요일	점검일시	점검결과	부적정 시 조치사항	확인	
					점검자	부서장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		:	[ ]적정 [ ]부적정			

※ 점검결과 표가 부족할 경우, 별지로 연속하여 작성

[별지 서식]

위험 작업허가 신청(승인)서

(해당란[ ]에 √ 표시)

신 청 자	성 명		소속	
	직 급		부 서 명	
신청 내역	작업내용	[ ]화기작업 [ ]전기작업 [ ]고소작업 [ ]밀폐공간작업 [ ]굴착작업 [ ]중량물작업 [ ]기타 위험작업		
	작업장소			
	작업일시	20 . . . :		
안전조치 이행계획	안전 보호구(장치) 또는 안전조치	[ ]소화기 비치 [ ]화재감시자 지정 [ ]절연장갑 착용 [ ]잠금장치 설치 [ ]안전꼬리표 설치 [ ]가스농도 측정 [ ]지하 배관, 배선 확인 [ ]작업계획서 수립 [ ]기타 안전보호구( )		
	2인 1조 작업	[ ]해당(동행 작업자명:) [ ]비해당		
	안전조치 세부 이행 계획			
서약 내용	1.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계획 및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. 2.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일시 작업중지 요청을 하겠습니다.			

위와 같이 위험 작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일자 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인)

확인자(부서장) 성명 (인)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**지사장 귀하 (본부 안전관리본부장)

위 위험 작업을 (승인, 불승인) 합니다.

처리 일자	20 . . .	결재	안전업무 담당자	안전관리감독자 (안전업무 담당 부서장)

※ 위와 같이 위험 작업을 승인하오니, 안전조치 이행계획에 따라 조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※ 불승인 시 불승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직원에게 반려처리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